

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10월 5일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10월 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5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(2009. 10. 15)
상정 및 의결

2. 제안설명

(제안 설명자 : 도시계획과장 이귀웅)

□ 제안이유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,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내 매수청구 거부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 제41조제5항을 따르도록 함.(안 제13조, 삭제)

- 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의 개정에 따라 고시원, 운수시설, 창고시설, 장례식장 용도를 재분류 함.(안 제30조부터 제45조까지)
- 다.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의 건폐율을 현재 20퍼센트 이하에서 30퍼센트 이하로 완화함.(안 제60조제2항)
- 라.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,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(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)는 40퍼센트 범위까지 건폐율을 완화함.(안 제62조제2항, 신설)
- 마.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원지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 규정을 삭제함.(안 제63조제7항, 삭제)
- 바.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리모델링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계획을 따르도록 정하고, 그 이외의 지역은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「건축법」 및 「주택법」에 따른 완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63조제8항)
- 사.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법령 또는 도시계획 조례의 제정·개정 등에 따라 현행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64조의2)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문	답 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리모델링 기준은 건축주에게 건축 기준을 완화해 준다는 것인지? ·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의 매수 청구에 대하여 매수하고 있는지? · 안 62조제2항의 신설내용은 어떤 뜻인지? · 자연녹지내 유원지의 건폐율 상향 조정은 한시적 규정인지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르고, 기타 지역은 건축법, 주택법을 따르도록 규정한 것임. ·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면 매수하고 있음. · 자연녹지지역내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됨. 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개정된 사항으로 한시적 유예사항이 아님.

4. 토론요지

- 가. 찬성토론 : 없 음
- 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를 삭제한다.

제30조제2항제5호 및 제31조제2항제4호 중 “초등학교”를 각각 “유치원, 초등학교”로 한다.

제32조제1항의 단서조항 중 “4층 이하”를 “4층 이하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, 해당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“초등학교”를 “유치원, 초등학교”로 한다.

제32조제2항제1호 중 “안마원 및 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”을 안마원, 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파목의 고시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의료시설. 이 경우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.”를 “의료시설 중에서 가목의 병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8호 중 “창고시설”을 “창고시설 중에서 창고 및 하역장”으로 하고, 제10호 “다목의 군사시설”을 “라목의 국방·군사시설”로 한다.

제33조제1항제5호 중 “초등학교”를 “유치원, 초등학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“의료시설. 이 경우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.”를 “의료시설 중에서 가목의 병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3호 중 “다목의 군사시설”을 “라목의 국방·군사시설”로 한다.

제34조제1항제5호 중 “초등학교”를 “유치원, 초등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“의료시설. 이 경우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.”를 “의료시설 중에서 가목의 병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1호 중 “(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에 한한다)”를 “다만,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, 도료류 판매소에 한한다.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4호 중 “다목의 군사시설”을 “라목의 국방·군사시설”로 한다.

제35조제1항제6호 중 “의료시설. 이 경우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.”를 “의료시설 중에서 가목의 병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0호 중 “다목의 군사시설”을 “라목의 국방·군사시설”로 한다.

제36조제1항제10호 중 “다목의 군사시설”을 “라목의 국방·군사시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의료시설. 이 경우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.”를 “의료시설 중에서 가목의 병원”으로 한다.

제37조제1항제13호 중 “다목의 군사시설”을 “라목의 국방·군사시

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
제38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1
호 중 “다목의 군사시설”을 “라목의 국방·군사시설”로 한다.

1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
제39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3호 중 “다목의 군사
시설”을 “라목의 국방·군사시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
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
제40조제2항제5호 중 “의료시설. 이 경우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
을 제외한다.”를 “의료시설 중에서 가목의 병원”으로 하며, 같은
항 제8호 중 “다목의 군사시설”을 “라목의 국방·군사시설”로 한
다.

제41조제2항제6호 중 “의료시설. 이 경우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
을 제외한다.”를 “의료시설 중에서 가목의 병원”으로 하며, 같은
항 제11호 중 “다목의 군사시설”을 “라목의 국방·군사시설”로 한
다.

제42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제7
호 중 “다목의 군사시설”을 “라목의 국방·군사시설”로 한다.

1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

제43조제1항제2호 중 “창고시설”을 “창고시설 중에서 가목의 창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

제44조제1항제3호 중 “초등학교”를 “유치원, 초등학교”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 중 “창고시설”을 “창고시설 중에서 가목의 창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단란주점 및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”을 “단란주점,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파목의 고시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8호 중 “창고시설”을 “창고시설 중에서 가목의 창고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

제45조제1항제9호 중 “창고시설”을 “창고시설 중에서 가목의 창고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제9호 중 “창고시설”을 “창고시설 중에서 가목의 창고 및 라목의 집배송 시설”로 한다.

17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

제46조 본문 중 “권장용도”를 “권장 또는 허용용도”로 한다.

제47조제5호의 “격리병원 및 장례식장”을 “격리병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및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16호 중 “촬영소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”을

“촬영소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창고 및 하역장과 다목 및 라목

1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. 다만,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·저장소와 위험물 제조소·저장소, 유독물 보관·저장시설에 한정한다.

1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. 이 경우 주차장 및 주유소와 함께 설치하는 기계식 세차설비는 제외한다.

1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. 다만, 교정시설, 보호관찰소, 갱생보호소,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·보육·교육·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.

18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

제51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0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. 다만, 교정시설, 보호관찰소, 갱생보호소,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·보육·교육·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정한다.

제58조제1항제5호 중 “창고시설”을 “창고시설 중에서 가목의 창

고”로 한다.

제6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.

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2조(건폐율의 완화) ①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·일반상업지역·근린상업지역 중에서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.

②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 및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,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(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완화할 수 있다.

제63조제7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리모델링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며, 그 이외 지역의 리모델링에 따른 용적

률은 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4조의2 및 「건축법」 제5조에 따른 완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

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4조의2(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)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변경할 수 있다.

제66조제1항 중 “15명”을 “20명”으로,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“공무원”을 “행정기관의 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교통 및 환경”을 “교통, 환경, 방재, 문화, 농림, 정보통신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490호
의결년월일	2009. 11. 23. (제157회)

제출년월일 : 2009. 10. 5.

제출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,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내 매수청구 거부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 제41조제5항을 따르도록 함.(안 제13조, 삭제)
- 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의 개정에 따라 고시원, 운수시설, 창고시설, 장례식장 용도를 재분류 함.(안 제30조부터 제45조까지)
- 다.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의 건폐율을 현재 20퍼센트 이하에서 30퍼센트 이하로 완화함.(안 제60조제2항)
- 라.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,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(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

증축하는 경우)는 40퍼센트 범위까지 건폐율을 완화함.(안 제62조제2항, 신설)

- 마.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원지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 규정을 삭제함.(안 제63조제7항, 삭제)
- 바.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리모델링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계획을 따르도록 정하고, 그 이외의 지역은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「건축법」 및 「주택법」에 따른 완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63조제8항)
- 사.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법령 또는 도시계획 조례의 제정·개정 등에 따라 현행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64조의2)

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를 삭제한다.

제30조제2항제5호 및 제31조제2항제4호 중 “초등학교”를 각각 “유치원, 초등학교”로 한다.

제32조제1항의 단서조항 중 “4층 이하”를 “4층 이하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, 해당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“초등학교”를 “유치원, 초등학교”로 한다.

제32조제2항제1호 중 “안마원 및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”을 안마원,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파목의 고시원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의료시설. 이 경우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.”를 “의료시설 중에서 가목의 병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8호 중 “창고시설”을 “창고시설 중에서 창고 및 하역장”으로 하고, 제10호 “다목의 군사시설”을 “라목의 국방·군사시설”로 한다.

제33조제1항제5호 중 “초등학교”를 “유치원, 초등학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“의료시설. 이 경우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.”를 “의료시설 중에서 가목의 병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3호 중 “다목의 군사시설”을 “라목의 국방·군사시설”로 한다.

제34조제1항제5호 중 “초등학교”를 “유치원, 초등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“의료시설. 이 경우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.”를 “의료시설 중에서 가목의 병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1호 중 “(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에 한한다)”를 “다만,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, 도료류 판매소에 한한다.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4호 중 “다목의 군사시설”을 “라목의 국방·군사시설”로 한다.

제35조제1항제6호 중 “의료시설. 이 경우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.”를 “의료시설 중에서 가목의 병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0호 중 “다목의 군사시설”을 “라목의 국방·군사시설”로 한다.

제36조제1항제10호 중 “다목의 군사시설”을 “라목의 국방·군사시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의료시설. 이 경우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.”를 “의료시설 중에서 가목의 병원”으로 한다.

제37조제1항제13호 중 “다목의 군사시설”을 “라목의 국방·군사시

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
제38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1
호 중 “다목의 군사시설”을 “라목의 국방·군사시설”로 한다.

1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
제39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3호 중 “다목의 군사
시설”을 “라목의 국방·군사시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
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
제40조제2항제5호 중 “의료시설. 이 경우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
을 제외한다.”를 “의료시설 중에서 가목의 병원”으로 하며, 같은
항 제8호 중 “다목의 군사시설”을 “라목의 국방·군사시설”로 한
다.

제41조제2항제6호 중 “의료시설. 이 경우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
을 제외한다.”를 “의료시설 중에서 가목의 병원”으로 하며, 같은
항 제11호 중 “다목의 군사시설”을 “라목의 국방·군사시설”로 한
다.

제42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제7
호 중 “다목의 군사시설”을 “라목의 국방·군사시설”로 한다.

1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

제43조제1항제2호 중 “창고시설”을 “창고시설 중에서 가목의 창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

제44조제1항제3호 중 “초등학교”를 “유치원, 초등학교”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 중 “창고시설”을 “창고시설 중에서 가목의 창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단란주점 및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”을 “단란주점,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파목의 고시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8호 중 “창고시설”을 “창고시설 중에서 가목의 창고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

제45조제1항제9호 중 “창고시설”을 “창고시설 중에서 가목의 창고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제9호 중 “창고시설”을 “창고시설 중에서 가목의 창고 및 라목의 집배송 시설”로 한다.

17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

제46조 본문 중 “권장용도”를 “권장 또는 허용용도”로 한다.

제47조제5호의 “격리병원 및 장례식장”을 “격리병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및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16호 중 “촬영소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”을

“촬영소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창고 및 하역장과 다목 및 라목

1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. 다만,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·저장소와 위험물 제조소·저장소, 유독물 보관·저장시설에 한정한다.

1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. 이 경우 주차장 및 주유소와 함께 설치하는 기계식 세차설비는 제외한다.

1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. 다만, 교정시설, 보호관찰소, 갱생보호소,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·보육·교육·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.

18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

제51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0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. 다만, 교정시설, 보호관찰소, 갱생보호소,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·보육·교육·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정한다.

제58조제1항제5호 중 “창고시설”을 “창고시설 중에서 가목의 창

고”로 한다.

제6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.

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2조(건폐율의 완화) ①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·일반상업지역·근린상업지역 중에서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.

②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 및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,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(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완화할 수 있다.

제63조제7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리모델링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며, 그 이외 지역의 리모델링에 따른 용적

률은 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4조의2 및 「건축법」 제5조에 따른 완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

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4조의2(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)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변경할 수 있다.

제66조제1항 중 “15명”을 “20명”으로,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“공무원”을 “행정기관의 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교통 및 환경”을 “교통, 환경, 방재, 문화, 농림, 정보통신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매수청구된 토지 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) ① 영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매수가 청구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해당 지역·지구 또는 구역별 건축기준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·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.</p> <p>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. 다만,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.</p> <p>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. 다만,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.</p> <p>② 영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매수가 청구된 토지에 설치 가능</p>	<p><삭 제></p>

현행	개정안
<p>한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.</p>	
<p>제30조(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① (생략)</p> <p>② 영 제71조제1항제1호 별표 2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</p> <p>1.~4. (생략)</p> <p>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<u>초등학교, 중학교 및 고등학교</u></p> <p>6.7. (생략)</p>	<p>제30조(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----- ----- 유치원, 초등학교, -----</p> <p>6.7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1조(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① (생략)</p> <p>② 영 제71조제1항제2호 별표 3 제2호에 따라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에서</p>	<p>제31조(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----- ----- 유치원, 초등학교,</p>

현행	개정안
<p>초등학교, 중학교 및 고등학교</p> <p>5.6. (생략)</p> <p>제32조(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① 영 제71조제1항제3호 별표 4 제1호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 다만, <u>4층 이하</u>의 건축물에 한한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<u>초등학교, 중학교 및 고등학교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② 영 제71조제1항제3호 별표 4</p>	<p>-----</p> <p>5.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2조(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①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4층 이하</u></p> <p>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, 해당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의 건축물에 한한다.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-----</p> <p>----- <u>유치원, 초등학교,</u> -----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</p>

현행	개정안
<p>제2호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 다만,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. 이 경우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안마원 및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.</p>	<p>1.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안마원,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과목의 고시원 -----.</p>
<p>2.3. (생략)</p>	<p>2.3. (현행과 같음)</p>
<p>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. 이 경우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.</p>	<p>4.----- ----- 의료시설 중에서 가목의 병원</p>
<p>5.~7. (생략)</p>	<p>5.~7. (현행과 같음)</p>
<p>8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. 다만,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.</p>	<p>8.----- ----- 창고시설 중에서 창고 및 하역장 -----</p>
<p>9. (생략)</p>	<p>9. (현행과 같음)</p>
<p>10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에</p>	<p>10.----- ----- 라</p>

현행	개정안
<p>서 <u>다목적 군사시설</u></p> <p>11.12. (생략)</p> <p>제33조(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① 영 제71조제1항제4호 별표 5 제1호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 다만, 18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.</p> <p>1.~4. (생략)</p> <p>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<u>초등학교, 중학교 및 고등학교</u></p> <p>6. (생략)</p> <p>② 영 제71조제1항제4호 별표 5 제2호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 다만, 18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의 <u>의료시설</u>. 이 경우 <u>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.</u></p>	<p><u>목의 국방·군사시설</u></p> <p>11.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3조(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①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-----</p> <p>----- <u>유치원, 초등학교,</u> -----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-----</p> <p>----- <u>의료시설</u> 중에서 <u>가목의 병원</u></p>

현행	개정안
5.~ 12. (생략)	5.~ 12. (현행과 같음)
1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 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에서 <u>다목의 군사시설</u>	13.----- ----- <u>라목</u> <u>의 국방·군사시설</u>
14.·15. (생략)	14.·15. (현행과 같음)
제34조(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① 영 제71조제1항제5호 별표 6 제1호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	제34조(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~ 4. (생략)	1.~ 4. (현행과 같음)
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<u>초등학교, 중학교 및 고등학교</u>	5.----- ----- <u>유치원, 초</u> <u>등학교,</u> -----
6. (생략)	6. (현행과 같음)
② 영 제71조제1항제5호 별표 6 제2호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~ 3. (생략)	1.~ 3. (현행과 같음)
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의 <u>의료시설</u> . 이 경우 <u>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.</u>	4.----- ----- <u>의료시설 중에서 가</u> <u>목의 병원</u>

현행	개정안
5.~10. (생략)	5.~10. (현행과 같음)
1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(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에 한한다.)	11.----- ----- 다만,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, 도료 류 판매소에 한한다.
12.13. (생략)	12.13. (현행과 같음)
1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에서 <u>다목의 군사시설</u>	14.----- ----- - <u>다목의 국방·군사시설</u>
15.16. (생략)	15.16. (현행과 같음)
제35조(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① 영 제71조제1항제6호 별표 7 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	제35조(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① - - - - - ----- ----- -----.
1.~5. (생략)	1.~5. (현행과 같음)
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의 <u>의료시설</u> . 이 경우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.	6.----- -- ----- <u>의료시설</u> 중에서 <u>가목의 병원</u>
7.~10. (생략)	7.~10. (현행과 같음)
② 영 제71조제1항제6호 별표 7 제2호에 따라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	②----- -----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
1.~9. (생략)	1.~9. (현행과 같음)
10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에서 <u>다목의 군사시설</u>	10.----- ----- -- <u>다목의 국방·군사시설</u>
11.12. (생략)	11.12. (현행과 같음)
제36조(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① 영 제71조제1항제7호 별표 8 제1호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	제36조(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~9. (생략)	1.~9. (현행과 같음)
10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에서 <u>다목의 군사시설</u>	10.----- ----- <u>다목의 국방·군사시설</u>
11.12. (생략)	11.12. (현행과 같음)
② 영 제71조제1항제7호 별표 8 제2호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	②----- ----- ----- -----.
1.2. (생략)	1.2. (현행과 같음)
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의 <u>의료시설</u> . 이 경우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.	3.----- -- ---- <u>의료시설</u> 중에서 <u>가목의 병원</u>
4.~11. (생략)	4.~11.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<p>제37조(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① 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1호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</p> <p>1.~12. (생략)</p> <p>1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에서 <u>다목의 군사시설</u></p> <p>14.·15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7조(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~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13.----- ----- <u>라목</u> <u>의 국방·군사시설</u></p> <p>14.·15. (현행과 같음)</p> <p>1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<u>제28호의 장례식장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8조(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① 영 제71조제1항제9호 별표 10 제1호에 따라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</p> <p>1.~13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② 영 제71조제1항제9호 별표 10 제2호에 따라 근린상업지역</p>	<p>제38조(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~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1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<u>제28호의 장례식장</u></p> <p>②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	----- -----
1.~10. (생략)	1.~10. (현행과 같음)
1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에서 <u>다목의 군사시설</u>	11.----- ----- - <u>다목의 국방·군사시설</u>
12.·13. (생략)	12.·13. (현행과 같음)
제39조(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① (생략)	제39조(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영 제71조제1항제10호 별표 11 제2호에 따라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	②----- ----- -----
1.~3. (생략)	1.~3. (현행과 같음)
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의 <u>의료시설</u> 중에서 <u>장례식장</u>	<삭제>
5.~12. (생략)	5.~12. (현행과 같음)
1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에서 <u>다목의 군사시설</u>	13.----- ----- ---- <u>다목의 국방·군사시설</u>
14.·15. (생략)	14.·15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1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<u>제28호의 장례식장</u>
제40조(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	제40조(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

현행	개정안
<p>할 수 있는 건축물) ① (생략)</p> <p>② 영 제71조제1항제11호 별표 12 제2호에 따라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</p> <p>1.~4. (생략)</p> <p>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의 <u>의료시설</u>. 이 경우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.</p> <p>6.7. (생략)</p> <p>8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에서 <u>다목적 군사시설</u></p> <p>9. (생략)</p>	<p>축할 수 있는 건축물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-----</p> <p>-- ---- <u>의료시설</u> 중에서 <u>가목의 병원</u></p> <p>6.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 <u>다목적 국방군사시설</u></p> <p>9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1조(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① (생략)</p> <p>② 영 제71조제1항제12호 별표 13 제2호에 따라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</p> <p>1.~5. (생략)</p> <p>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의 <u>의료시설</u>. 이 경우 격리병원</p>	<p>제41조(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-----</p> <p>-- ---- <u>의료시설</u> 중에서 가</p>

현행	개정안
<p><u>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.</u></p> <p>7.~ 10. (생략)</p> <p>1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 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에서 <u>다목의 군사시설</u></p> <p>12. (생략)</p> <p>제42조(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① 영 제71조제 1항제13호 별표 14 제1호에 따라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</p> <p>1.~ 15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② 영 제71조제1항제13호 별표 14 제2호에 따라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</p> <p>1.~ 6. (생략)</p> <p>7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 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에서 <u>다목의 군사시설</u></p> <p>8. (생략)</p> <p>제43조(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</p>	<p><u>목의 병원</u></p> <p>7.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----- ----- <u>라</u> <u>목의 국방·군사시설</u></p> <p>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2조(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~ 15. (현행과 같음)</p> <p>1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<u>제28호의 장례식장</u></p> <p>②----- ----- ----- -.</p> <p>1.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----- ----- <u>라</u> <u>목의 국방·군사시설</u></p> <p>8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3조(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</p>

현행	개정안
<p>의 어느 하나와 같다. 다만,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.</p>	<p>----- -----.</p>
<p>1.2. (생략)</p>	<p>1.2. (현행과 같음)</p>
<p>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<u>초등학교</u></p>	<p>3.----- ----- <u>유치원, 초등학교</u></p>
<p>4.~6. (생략)</p>	<p>4.~6. (현행과 같음)</p>
<p>7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 18호의 <u>창고시설</u>. 다만, 농업·임업·축산업·산업용에 한한다.</p>	<p>7.----- <u>창고시설</u> 중에서 <u>가목의 창고</u>. -----.</p>
<p>8.~12. (생략)</p>	<p>8.~12. (현행과 같음)</p>
<p>② 영 제71조제1항제15호 별표 16 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 다만,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.</p>	<p>②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 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. 이 경우 <u>단란주점 및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</u>을 제외한다.</p>	<p>1.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단란주점,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파목의 고시원</u>. -----.</p>
<p>2.~7. (생략)</p>	<p>2.~7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다.</p> <p>1.~4. (생략)</p> <p>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에서 <u>격리병원 및 장례식장</u></p> <p>6.~9. (생략)</p> <p>10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의 <u>창고시설. 다만,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.</u></p> <p>1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<u>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</u> 가. <u>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·저장소. 다만,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.</u> 나. <u>위험물 제조소</u> 다. <u>위험물 저장소</u> 라. <u>유독물 보관·저장시설</u></p> <p>1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0호의 <u>자동차 관련 시설로 하되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</u></p>	<p>-----.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----- -- ----- <u>격리병원</u></p> <p>6.~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의 <u>창고시설 중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창고 및 하역장과 다목 및 라목</u></p> <p>1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<u>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. 다만,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·저장소와 위험물 제조소·저장소, 유독물 보관·저장시설에 한한다.</u></p> <p>1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0호의 <u>자동차 관련 시설. 이 경우 주차장 및 주유소와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함께 설치하는 기계식 세차설비는 제외한다.</p>
<p>가. 주차장</p>	
<p>나. 주유소와 함께 설치하는 자동세차장</p>	
<p>13.14. (생략)</p>	<p>13.14. (현행과 같음)</p>
<p>1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 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에서 교도소,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·보육·교육·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</p>	<p>1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. 다만, 교정시설, 보호관찰소, 갱생보호소,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·보육·교육·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.</p>
<p>1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 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에서 촬영소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</p>	<p>16.----- -- ----- 촬영소</p>
<p>17. (생략)</p>	<p>17. 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설></p>	<p>18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</p>
<p>제51조(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)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</p>	<p>제28호의 장례식장</p>
<p>중심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	<p>제51조(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) ①</p>
<p>1.~9. (생략)</p>	<p>----- ----- -----.</p>
<p>1.~9. (생략)</p>	<p>1.~9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10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 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</p> <p>가. 교도소</p> <p>나.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갇셈·보육·교육·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</p>	<p>10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. 다만, 교정시설, 보호관찰소, 갇셈보호소, 그 밖에 범죄자의 갇셈·보육·교육·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.</p>
<p>11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8조(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) ① 영 제78조제1항 별표 23 제1호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 다만,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.</p>	<p>제58조(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) ①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 18호의 <u>창고시설</u>. 다만, 농업·임업·축산업·수산업용에 한한다.</p> <p>6. ~ 9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<u>창고시설 중에서 가목의 창고</u>. -----</p> <p>6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0조(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) ① (생략)</p>	<p>제60조(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) ①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유원지시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1항을 준용한다.</p>	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.</p>
<p>③ (생략)</p> <p>제62조(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)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·일반상업지역·근린상업지역 중에서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.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2조(건폐율의 완화) ①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·일반상업지역·근린상업지역 중에서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.</p> <p>②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 및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, 창고 시설 또는 연구소(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완화할 수 있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63조(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) ① ~ ⑥ (생략) ⑦ 유원지시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제1항을 준용한다. 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63조(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</p> <p>⑧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리모델링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며, 그 이외 지역의 리모델링에 따른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4조의2 및 「건축법」 제5조에 따른 완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</p> <p>제64조의2(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)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변경할 수 있다.</p>
<p>제66조(구성) ① 법 제113조 및 영 제112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</p>	<p>제66조(구성) ① - - - - -</p>

현행	개정안
<p>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<u>15명</u>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제 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<u>공무원</u></p> <p>3. 토지이용, 건축, 주택, <u>교통</u> 및 <u>환경</u> 등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</p> <p>④ (생략)</p>	<p>----- -----<u>20명</u>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행정기관</u> <u>의 공무원</u></p> <p>3. ----- <u>교통, 환경, 방재, 문화, 농림, 정보통신</u> --- -----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〈관계 법령발췌서〉

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41조 (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)

⑤법 제4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"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·광역시·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허용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 <개정 2005.9.8, 2009.7.7>

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
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
- 2의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(같은 호 차목 및 타목은 제외한다)로서 3층 이하인 것
3. 공작물

제84조 (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)

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,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09.7.7>

제85조 (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)

⑨ 삭제 <2009.7.7>

제93조 (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)

②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, 제82조, 제88조 및 「수산업법 시행령」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해양부령(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말한다)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·광역시·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. <신설 2005.1.15, 2008.2.29, 2008.7.28, 2009.7.7>

○ 건축법 시행령 [별표 1]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(제3조의4 관련)

9. 의료시설

- 가. 병원(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)
- 나. 격리병원(전염병원, 마약진료소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)

28. 장례식장